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99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일

발 의 자 : 신 정 호 의원 (1명)

찬 성 자 : 박상구, 경만선, 황인구,
이석주, 김종무, 이준형,
양민규, 이광호, 이호대,
임만균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도시재생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된 기금의 용도 외에 사용가능한 요건을 강화하여 재원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용기준을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제7호 신설).
- 나.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강화함(안 제6조제12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첨(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제6조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용

제12조제4항 중 “출석(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를 “출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같은 조 제6항
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
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p> <p>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기금의 용도) ----- -----.</p> <p>1. ----- -----</p> <p>2. ----- ----- ----- ----- -----</p> <p>3. <u>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u></p> <p>4. <u>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u></p> <p>5. <u>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u></p> <p>6.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의 범위 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u></p> <p>7. <u>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u></p>

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의 사전

기획비 및 운영비

3.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
업비

5. 차입금 및 이자 상환

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
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8. -----

9. -----

10. -----

11. -----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비용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
를 말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은 재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출석
으로 -----
----- . ----, --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략)

〈신 설〉

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

----- .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

-----.

⑦ -----

-----.

⑧ -----

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⑨ -----

-----.